

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3-6호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·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9일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사부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사건 수사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사4부를 신설하고, 공소부를 폐지하되 공소부의 소관 업무 중 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건관리담당관에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수사 이외의 일체의 송무업무 총괄을 인권수사정책관에게 각각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운영지원담당관실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
담당관실

- 팩스 : (02)6320-0259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[(02)6320-0281]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(<http://www.cio.go.kr>) <법령정보 - 입법·행정예고>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